

自願奉仕 管理體系 改善方案

1994. 12.

韓惠卿 韓忠吉

張玄燮 姜惠圭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目次

I. 序論	5
1. 研究背景	5
2. 研究目的 및 內容	8
3. 研究方法	8
II. 現況 및 問題點	10
1. 現況	10
2. 問題點	20
III. 自願奉仕 管理體系 改善方案	31
1. 基本原則	31
2. 基本方向	31
3. 推進戰略	32
IV. 結論 및 政策建議	40
參考文獻	44

表 및 圖 目次

<表 II- 1> 自願奉仕活動 場所	13
<表 II- 2> 社會福祉機關種別 平均 自願奉仕者數	13
<表 II- 3> 自願奉仕活動 未參與 理由	15
<表 II- 4> 自願奉仕活動 參與契機	16
<表 II- 5> 知識·技術 習得方式	17
<表 II- 6> 現在 活用하고 있는 自願奉仕者 數	18
<表 II- 7> 現在の 自願奉仕者數에 대한 態度	18
<表 II- 8> 自願奉仕者 活用上的 어려움	19
<表 II- 9> 自願奉仕者 募集方法	19
<表 II-10> 自願奉仕者 教育 回數	20
<表 II-11> 自願奉仕者 募集 및 參與經路	20
<表 II-12> 自願奉仕者の 教育內容	21
<表 II-13> 自願奉仕者 教育프로그램 內容	22
<表 II-14> 社會福祉機關의 自願奉仕者 教育訓練 可能與否	23
<表 II-15> 自願奉仕者 募集方法	24
<表 II-16> 社會福祉機關의 自願奉仕者 管理方法	25
<表 II-17> 自願奉仕者 活性化를 위한 政府의 役割	27
<表 II-18> 自願奉仕者가 희망하는 政府支援內容	28
<表 II-19> 機關이 희망하는 政府支援內容	28
<表 II-20> 自願奉仕聯合機構 構成時 重點的으로 遂行해야 할 役割	29
<圖 1> 自願奉仕의 活性化를 위한 協調體系	35

I. 序論

1. 研究背景

- 自願奉仕活動이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公私組織에 自發的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定意될 수 있음.¹⁾
- 한국 自願奉仕活動의 特性으로는 극히 저조한 參與率, 여성, 학생, 기독교 교인, 20대 연령층 중심의 참여, 활동의 짧은 持續度, 활동동기와 욕구에 있어서 利他的인 社會的 責任意識보다는 개인의 經驗追求的 動機에 의해 주도되는 參與形態를 보인다는 점 등이 지적됨.²⁾ 즉 한마디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社會的 關心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福祉社會를 향한 市民參與의 일환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강조되고 있음.
-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이 活性化되어야 할 必要性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1) Kramer는 自願奉仕活動(volunteerism)을 政策의 立案, 計劃, 代辯, 行政, 募金 등에 있어서 자유롭게 개인적, 직접적으로 他人 또는 集團을 원조하는 일에 市民參與와 같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Ralph M. Kramer,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pp.8~9).

그리고 Wilensky 등은 自願奉仕活動을 ① 活動이 公式的으로 組織化되어야 하며, ② 개인적인 慈善이나 이웃, 친척간의 相互扶助는 自願奉仕의 領域에서 排除되는 것이며, ③ 社會的 後援의 성격을 띠어야 하고, ④ 그 목표가 利潤追求에 관련되어 있으면 안 되고, ⑤ 人間의 欲求에 統合의이고 直接的으로 副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Wilensky et al., 장인협 역,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1979, pp.119~120).

2) 조희일, 「자원봉사의 동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34(2), 1988, pp.36~37.

- 첫째,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포함한 全體 社會의 責任이 요구됨. 한 사회의 발전과 복지는 政府나 몇 개의 社會團體 또는 소수 엘리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市民 대다수가 참여하고 협동하는 힘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 둘째, 자원봉사활동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社會적으로 필요한 存在라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精神的 疾病이나 逸脫行爲를 예방하고, 個人的 滿足感과 統合感을 느끼게 하며 孤立感에서 벗어나게 함.
 - 셋째, 자원봉사활동은 제반 社會적 상황에 대한 생생한 知識과 情報 및 規範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며, 社會階層間의 間격을 메꾸어 줌.
 - 넷째,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自助(self-help)的 事業에 참여함으로써 地域社會의 健康을 증진시키며, 地域社會의 發展과 變化를 주도함.
 -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은 자원이 부족한 公的, 民間 福祉機關의 人力을 보충해 줌.
- 1960년대 초 케네디 대통령의 “國家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國家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라”는 권고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강력한 理念的 刺戟劑로 작용했던 미국의 경우, 전체 성인의 약 35%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60%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다고 밝힐 정도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參與度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영국의 경우에도 15세 이상 인구의 15%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³⁾
- 이들 先進國의 자원봉사활동은 人間尊重의 精神과 民主主義 原則에 입각하여 社會의 共同善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利他心의 구현을 통해 自己實現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서, 선진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自願主義 (voluntarism)와 多元主義(pluralism)의 價値를 수호하는 역할을 함.

3) Adams Graycar, "Informal, Voluntary and Statutory Services: The Complex Relationship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13, No.4, 1983, pp.389~390.

-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保健福祉部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21세기를 대비하는 社會福祉 政策課題와 發展方向을 제시하면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法的, 制度的 支援裝置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시민들의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認識程度와 社會的 認定度가 낮은 점임.
 - 둘째, 우리의 社會的 環境이 자원봉사활동이 活性化되기에 알맞은 條件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빠른 속도로 産業化를 달성한 우리나라는 매우 긴 勞動時間을 기록하고 있으며,⁴⁾ 현행과 같은 入試爲主의 教育制度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됨.
 - 실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自願奉仕活動에 참여하지 못한 理由를 질문하는 조사결과들에 의하면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⁵⁾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이 20대의 女性 혹은 大學生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機關이나 施設, 團體의 管理能力 및 자원봉사활

4) 1991년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49.3시간인 것으로 나타남.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3.

5) 정무장관(제2)실의 1993년 전화조사에 의하면, 전국 6대 도시 15세 이상 1,000명 중 자원봉사활동 미경험자 833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주요 이유를 질문한 결과 59.4%가 시간을 낼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500명에 대한 면접조사에서도 미경험자 150명 중 61.3%는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었다고 응답함. 정무장관(제2)실,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조사보고서』, 1993.

동에 대한 制度的 支援 및 육성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임.

- 따라서 本 研究은 우리나라의 自願奉仕活動이 活性化되지 못한 여러 가지 理由 중에서도 管理體系上의 問題點에 초점을 맞추고, 이의 改善策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管理體系上의 개선은, 앞으로 社會·經濟的 與件이 바뀌고 市民參與意識이 成熟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參與할 意思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임.

2. 研究目的 및 內容

- 本 研究의 目的은 사회복지 분야의 自願奉仕 管理體系를 改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組織化와 教育訓練의 強化, 制度的 支援을 위한 政策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임.
- 위와 같은 研究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本 研究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公共分野, 民間 社會福祉分野, 病院의 自願奉仕活動 現況을 파악하고 問題點을 분석함.
 - 제III장에서는 自願奉仕活動 管理體系의 改善方案을 기본원칙, 組織, 教育訓練, 制度的 支援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 제IV장에서는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政策方向을 제시함.

3. 研究方法

- 本 研究의 方法은 다음과 같은 2가지로 분류됨.
 - 첫째, 공공분야와 민간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現況을 把握하기 위해서 既存의 資料 및 調查結果를 분석함.
 -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現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綜合病院의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원에서 소규모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즉 전국의 綜合病院 262개소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994년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108개 종합병원의 조사표를 회수하였음.

II. 現況 및 問題點

1. 現況

가. 公共部門의 自願奉仕活動 現況

- 1992년 韓國社會福祉協議會의 발표에 의하면, 등록된 自願奉仕者 數는 약 357,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중 234,000명이 行政 및 公共機關의 봉사자로 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公共部門의 活動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을 것임.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保健福祉部, 文化體育部, 法務部가 소관하고 있는 활동 중의 일부는 公益을 위한 無償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되며, 앞으로 이 분야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保健福祉部, 文化體育部, 法務部가 소관하는 활동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1) 保健福祉部 所關

- 兒童福祉法 제7조에 兒童委員制度를 규정하고 있음. 1994년 6월 30일 현재 정원 7,516명에 현원 7,112명이 위촉되어 있음.⁶⁾
 - 서울 은평구의 경우 1개 동에 2명씩 총 41명이 위촉되어 兒童委員協議會가 운영되고 있음. 運營費 지원은 1993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會費

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로 운영되며, 管内 兒童福祉施設과 少年少女家長, 어린이날 行事 등을 지원함.

2) 文化體育部 所關

- 靑少年基本法 제22조에 靑少年指導委員制가 규정되어 있음. 市長·郡守·區廳長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음. 1994년 6월 현재 40,430명이 위촉되어 있음.⁷⁾
 - 서울 은평구 불광 1동의 경우 20명의 靑少年善導委員會가 구성되어 있는데, 월 5만원 정도의 運營費 지원이 地方費 豫算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委員들의 會費 釀出을 통해 불우학생 장학사업 등의 善導事業을 실시함. 文化體育部에서는 연 1회 市·道別 委員研修費用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함.

3) 法務部 所管

- 保護觀察法 제18조~제23조에 의해 保護委員은 保護觀察官을 도와 대상자에 대한 指導와 援護를 하고 拘禁施設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環境調査 및 改悛活動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社會奉仕에 대한 열의와 활동력이 있는 民間篤志家를 法務部長官이 위촉함. 1992년 12월 31일 현재 8,312명이 위촉되어 있으며,⁸⁾ 이들의 활동은 再犯抑制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更生保護委員은 更生保護法 제17조에 의해, 更生保護對象者에 대해 보호업무를 행하고 기타 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위촉함.
 - 1992년 12월 31일 현재 14,17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매년 전국 更生保護

7) 文化체육부 靑소년지도과 내부자료.

8) 법무부, 『법무연감』, 1992.

大會를 개최하여 숨은 功勞者를 發掘하고 褒賞함.

- 保護觀察技法 등 專門教育을 실시하며 수시로 검사장 등이 회합에 참석, 격려하기도 함.
 - 大學生을 更生保護委員으로 위촉하여 소년원 방문, 비행청소년 면담, 학과지도,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人間關係 形成을 도모하기도 함. 全國大學生更生保護委員聯合會 총회 및 지부별 세미나를 개최하며 우수실적자 60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更生保護會 직원으로 특채의 기회를 주기도 함.
- 保護少年指導委員은 少年院法 제51조, 少年院法施行令 제115조에 의해 少年院의 保護少年 등의 선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法務部長官이 指導委員으로 위촉하여 矯正教育에 참여시키는 것임.
- 1992년 12월 31일 현재 1,526명이 指導委員으로 위촉되어 원생교육 현장 참여, 신앙지도, 정신교육, 특별활동지도 및 취업알선의 업무를 담당함.

나. 民間部門의 自願奉仕活動 現況

1) 民間 社會福祉分野의 自願奉仕活動

- 정무장관(제2)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전국 6대 도시 15세 이상 인구 1,000명 중 조사 당시 自願奉仕를 하고 있는 경우는 69명으로 나타남.⁹⁾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곳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의 具體的 奉仕現場이 57.5%, 所屬奉仕團體인 경우가 17.2%로 나타났음(表 II-1 참조).

9) 정무장관(제2)실, 앞 글, 1993, p.48.

<表 II-1> 自願奉仕活動 場所

봉사 장소	%
사회복지시설·병원 등 구체적 봉사현장	57.5
소속봉사단체	17.2
피봉사자 가정	4.5
주택	3.7
행정관청	3.7
기 타	13.4
계	100.0(N=134)

資料: 정무장관(제2)실,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조사보고서』, 1993, p.59.

- 한편 여성개발원이 조사한 173개소의 복지기관 평균 自願奉仕者 數는 88.2명이며, 여성, 노인, 아동을 위한 복지기관보다는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복지기관의 自願奉仕者 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表 II-2 참조).

<表 II-2> 社會福祉機關種別 平均 自願奉仕者數

사회복지기관	명
아동복지기관	60.5
노인복지기관	50.1
장애인복지기관	185.1
여성복지기관	12.8
지역사회복지기관	99.9
전체	88.2

資料: 이청자 외,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p.35, p.37.

(1) 自願奉仕 參與意思 및 動機

- 전국 14개 市·道 사회복지협의회 소재지의 1,4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김성이의 연구(1988)에 의하면, 自願奉仕活動의 經驗이 없는 사람들

1,033명 중 자원봉사활동 參與意思를 가지는 경우는 58.2%나 되었음.¹⁰⁾

- 정무장관(제2)실이 실시한 조사(1993)에서도 현재 自願奉仕活動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 45.5%가 가능하면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1.9%로 나타남. 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거나 전혀 생각이 없는 경우는 25%에 불과했음. 이같은 비율은 특히 20대, 30대 연령층과 專門·管理職 종사자에게서 높게 나타나, 學歷과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參與意思가 많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들을 自願奉仕活動으로 誘導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開發이 요구됨.
- 이들의 자원봉사 參與可能時期는 5년 이내가 21.5%, 현재는 알 수 없다가 45.2%이며,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비율은 8.6%에 불과하여 이들의 참여의 사란 구체적이지 못한 막연한 바람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참여의 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마케팅 리서치에서 需要豫測에 사용하는 購買意向法을 원용하여 전국 6대 도시의 自願奉仕人力의 供給을 推定한 결과, 약 50만명이 自願奉仕活動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됨.¹¹⁾
- 위와 같은 조사결과들은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認識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앞으로 社會·經濟的 與件이 변화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支援이 制度化되면 자원봉사활동 參與人口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줌.

(2) 自願奉仕活動 參與를 가로막는 障礙要因

- 위와 같은 높은 참여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參與하는 比率은 매우 낮은 수준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무장관(제2)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自願奉仕活動에 參與하지 않는 理由로 응

10) 김성이, 『자원봉사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11) 추정공급량=모수(20,631,288명) × 현재비활동자비율(0.931) × 참여의향가중치(0.171) × 1년내 활동가능비율(0.152). 정무장관(제2)실, 앞 글, 1993.

답자의 59.4%가 時間을 낼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음(表 II-3 참조). 그러나 14.3%는 具體的 方法이나 對象을 몰라서라고 응답했고, 마땅한 活動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4.2%나 되었음.

-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弘報나 프로그램의 不足을 보여주는 例이며, 이에 대한 對策이 요구됨.

<表 II-3> 自願奉仕活動 未參與 理由

이 유	%
시간을 낼 수 없어서	59.4
구체적 방법·대상을 몰라서	14.3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9.7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없어서	6.6
마땅히 할만한 활동이 없어서	4.2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1.7
기 타	4.1
계	100.0(N=833)

資料: 정무장관(제2)실,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조사보고서』, 1993, p.50.

- 반면, 현재 활동자의 자원봉사활동 參與契機로는 스스로 自願奉仕團體를 방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1.3%), 참여하는 씨클이나 團體活動의 一環(19.1%), 친구·친지·이웃의 勸誘(14.6%)에 의한 참여가 많았으며, 매스컴의 報道 및 案内는 13.3%, 自願奉仕團體의 弘報는 15.3%, 自願奉仕團體의 勸誘는 6.0%였음.

- 즉,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욕구가 큰 사람이 스스로 自願奉仕團體를 訪問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自願奉仕團體의 專門的 努力이나 弘報는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줌.

- 자원봉사활동 중단자의 活動中斷 理由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무장관(제2)실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活動中斷者의 參與契機, 知識 및 技術의 습득방법은 現在活動者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활동중단자의 자원봉사활동 參與契機는, 현재 활동자와 비교해 볼 때, 스스로 자원봉사단체를 訪問한 경우보다는 매스컴의 報道 및 案内, 참여하는 社群 및 團體活動의 一環으로, 그리고 친구·친지·이웃의 勸誘에 의해 참여하게 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自願奉仕團體의 弘報나 勸誘에 의해 참여하게 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表 II-4 참조).

<表 II-4> 自願奉仕活動 參與契機

참여 계기	활동중단자 %	현재활동자 %
TV/라디오/신문보도 및 안내	20.5	13.3
자원봉사단체의 홍보	17.5	15.3
자원봉사단체의 권유	6.5	6.0
친구/친지/이웃의 권유	16.0	12.7
스스로 자원봉사단체 방문	18.0	31.3
참여 社群/단체활동의 일환	19.5	18.7
기 타	2.0	2.7
계	100.0(N=200)	100.0(N=150)

資料: 정무장관(제2)실,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조사보고서』, 1993, p.75.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知識과 技術의 習得經路에 있어서 현재활동자는 所屬 團體의 學習參加가 38.7%나 되었으나, 활동중단자의 경우에는 38%가 특별한 준비가 없었다고 응답함(表 II-5 참조). 즉 활동중단자의 1/3 이상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敎育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表 II-5> 知識·技術 習得方式

습득 방식	활동중단자 %	현재활동자 %
소속단체 학습에 참가	30.0	38.7
독서등에 의한 자기학습	6.0	21.3
공공기관의 연수·강좌참가	15.0	14.0
민간단체의 연수·강좌참가	8.5	11.3
특별한 준비 없음	38.0	14.0
기 타	2.5	0.7
계	100.0(N=200)	100.0(N=150)

資料: 정무장관(제2)실,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조사보고서』, 1993, p.88.

- 또한 정무장관(제2)실의 조사결과,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서 필요한 資材와 施設調達の 어려움(20.9%), 行政的 支援 부족(19.7%), 活動領域의 부족(10.9%), 知識과 機能의 학습부족(10%)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음. 이에 대한 財政的, 制度的 支援이 요구됨.

2) 綜合病院의 自願奉仕活動

- 본 연구원의 우편조사¹²⁾ 결과에 의하면, 조사표가 회수된 108개의 綜合病院 중의 59개소(54.6%)가 自願奉仕者를 活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奉仕者의 規模는 100명 미만인 病院이 36개소(61%)였으며(表 II-6 참조), 確保된 自願奉仕者에 대해서 충분하거나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2개소(73.7%)이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5개소(26.3%)로 나타남(表 II-7 참조).

12) 본 연구원에서는 病院의 자원봉사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국의 綜合病院 262개소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4년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108개 綜合病院의 조사표가 회수되었음.

<表 II-6> 現在 活用하고 있는 自願奉仕者 數

자원봉사자 수	개소(%)
100명 이하	36(61.0)
100 ~ 200명	7(11.9)
200 ~ 300명	11(18.6)
300 ~ 400명	2(3.4)
400 ~ 500명	2(3.4)
500명 이상	1(1.7)
계	59(100.0)

<表 II-7> 現在의 自願奉仕者數에 대한 態度

자원봉사자 수	개소(%)
충분히 필요한 만큼 확보	14(24.6)
충분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수 확보	28(49.1)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	13(22.8)
절대적으로 부족	2(3.5)
계	57(100.0)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종합병원에는 대체로 社會事業科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管理上의 어려움 때문에 自願奉仕者를 活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병원들도 활용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自願奉仕者 管理의 문제를 지적한 경우(42.0%)가 가장 많았음(表 II-8 참조).

<表 II-8> 自願奉仕者 活用上의 어려움

활용 어려움	개소(%)
자원봉사자 모집	6(12.0)
자원봉사자 배치	2(4.0)
자원봉사자 교육	7(14.0)
자원봉사자 관리	21(42.0)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7(14.0)
기 타	7(14.0)
계	50(100.0)

- 종합병원 자원봉사자의 募集은 주로 宗教團體 및 地域社會의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66.7%), 大衆媒體를 통한 弘報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表 II-9 참조).

<表 II-9> 自願奉仕者 募集方法

모집방법	개소(%)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홍보	0(0.0)
대학의 관련학과 홍보게시판	8(14.0)
병원 회보 등 유인물	5(8.8)
병원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홍보	4(7.0)
종교단체 및 지역사회모임시	38(66.7)
기 타	2(3.5)
계	57(100.0)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병원의 1/3가량이 自體 教育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表 II-10 참조).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있는 병원은 60%, 사기진작 방안이 있다고 응답한 병원은 77%에 머물러 自願奉仕者 教育訓練 및 報償體系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表 II-10> 自願奉仕者 教育 回數

교육회수	개소(%)
5회 미만	31(77.5)
5 ~ 9회	5(12.5)
10 ~14회	4(10.0)
계	40(100.0)

2. 問題點

가. 體系的인 弘報 不足

- 현재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弘報는 주로 매스컴에 의존함.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중 69%에서 매스컴에 의해 자원봉사자 募集 弘報가 이루어지고 있음(表 II-11 참조).

<表 II-11> 自願奉仕者 募集 및 參與經路

구 분	모집경로	참여경로
TV·라디오·신문	69.0	12.3
전단·포스터	3.4	13.9
기존 자원봉사자	6.9	54.5
종교·사회단체	17.2	16.4
기 타	3.4	2.9
계	100.0(N=29)	100.0(N=245)

資料: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의 활용실태와 효율적 활용체계에 관한 조사 연구』, 1993, p.38.

- 그러나 실제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既存 活動者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54.5%)가 가장 많고, 16.4%는 宗教·社會團體를 통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원봉사자의 募集과 活動 參與經路間의 간격을 보여주는 한 예이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弘報가 體系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나. 敎育訓練 機會 및 內容上의 問題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체 自願奉仕者 敎育訓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48.9%에 불과하였음.¹³⁾
- 김성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敎育內容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사람이 58.2%, 基礎理論敎育 38.2%, 實務敎育 22%, 再敎育 16.8%, 指導監督이 18.6%였음. 이는 복지기관들의 敎育訓練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줌. 오리엔테이션조차 받지 않은 경우도 40% 이상이며, 再敎育을 받은 사람의 비율, 實務敎育을 받은 사람의 비율, 정기적인 指導監督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表 II-12 참조).

<表 II-12> 自願奉仕者의 敎育內容(중복응답)

敎育內容	명(%)
오리엔테이션	1034(58.2)
기초이론敎育	678(38.2)
실무敎育	391(22.0)
재敎育	299(16.8)
정기 지도감독	330(18.6)

資料: 김성이, 『自願奉仕活動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p.82.

-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敎育內容은 理論的 講義 위주(65.5%)이며, 集團討議(20.7%)나 現場實習(10.3%)을 시키는 비율은 매우 낮았음. 여성개발원의 조사에서도 專門的인 敎育을 시키는 비율은 3.2%에 불과했음(表 II-13 참조).

<表 II-13> 自願奉仕者 敎育프로그램 內容

13) 이청자 외,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교육프로그램	개소(%)
업무오리엔테이션	64(29.5)
역할 및 자세	74(34.1)
기초실무교육	62(28.6)
전문교육	7(3.2)
기 타	10(4.6)
계	217(100.0)

資料: 이청자 외,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p.47.

-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活用할 意向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教育訓練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74.4%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教育訓練에 필요한 豫算 및 人力不足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개별 기관에서의 自體教育이 不可能한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自體的인 教育訓練의 可能性에 대해서 아동복지기관의 56.1%, 노인 복지기관의 50.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함(表 II-14 참조).

<表 II-14> 社會福祉機關의 自願奉仕者 教育訓練 可能與否

사회복지기관	할 수 있음 개소(%)	할 수 없음 개소(%)
아동복지기관	23(56.1)	18(43.9)
노인복지기관	14(50.0)	14(50.0)
장애인복지기관	31(86.1)	5(13.9)
여성복지기관	15(65.2)	8(34.8)
지역사회복지기관	48(100.0)	0(0.0)
계	131(74.4)	45(25.6)

資料: 이청자 외,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p.77.

- 이상의 조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教育訓練의 문제점으로서 지속적인 補修教育의 부재, 理論教育 편중, 形式的인 教育, 비체계적인 隨時教育, 산발적인 기관별 重複教育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같은 教育訓練上的 問題點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 自願奉仕者에 대한 管理不足

- 자원봉사자에 대한 管理는 자원봉사자의 募集 및 配置, 指導監督, 評價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함.
- 자원봉사자 募集業務의 경우, 김성이의 조사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擔當하는 職員이 있는 경우가 30%, 다른 기관과 協同的으로 募集하는 경우가 25.5%, 擔當部署 및 全擔職員이 있는 경우가 17.6%, 모든 職員이 총동원되는 경우가 13.9%임(表 II-15 참조).

<表 II-15> 自願奉仕者 募集方法

모집방법	%
담당부서 및 전담직원 있음	17.6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 있음	30.0
모든 직원 총동원	13.9
다른기관과 협동적으로 모집	25.5
다른기관에 전적으로 의존	6.0
무응답	7.0
계	100.0 (N=216)

資料: 김성이, 『자원봉사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p.133

- 그리고 募集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음(66.6%).
- 결국 자원봉사자 募集을 위한 擔當部署나 全擔職員이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마다 非定期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원봉사자 募集業務의 효과성을 떨어뜨림.
- 또한 시설별로 자원봉사자 指導監督을 全擔하는 職員이 있는 경우는 40% 미만이며, 他業務와 兼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監督者로서의 訓練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專門性이 부족하며, 指導監督의 내용은 매우 미흡함.
- 자원봉사자에 대한 正規的인 指導時間이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 기관의 38.4%에 불과했음.
- 자원봉사자 活動規定 및 指針이 있는 경우는 38%에 불과했으며, 評價基準은 27.8%만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주요 評價者는 擔當職員(36.6%), 자원봉사자 自體評價會(27.3%), 地域住民 및 受惠者(0.9%)의 순서로 나타남.
- 한편 자원봉사자를 管理하는 方法에 대한 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활동일지 기록(19.5%), 개별지도(17.4%), 자료제공(17.0%), 자체조직운영

(15.0%), 평가회/교육(10.7%)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16.1%나 되었음. 특히 아동, 노인, 여성복지기관은 25% 이상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表 II-16 참조).

<表 II-16> 社會福祉機關의 自願奉仕者 管理方法

관리방법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지역사회	전체
	%	%	%	%	%	개소(%)
관여 없음	28.4	26.5	17.0	25.0	5.5	72(16.1)
활동일지기록	17.3	16.3	20.2	17.5	21.3	87(19.5)
자료제공	9.9	8.2	23.4	7.5	21.3	76(17.0)
자체조직운영	16.0	18.4	11.7	12.5	15.8	67(15.0)
개별지도	14.8	16.3	17.0	25.0	17.5	78(17.4)
평가회·교육	7.4	4.1	6.4	7.5	16.9	48(10.7)
기 타	6.2	10.2	4.3	5.0	1.6	19(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47(100.0)

資料: 이청자 외,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p.53.

- 김성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自願奉仕者 自治機構가 있는 경우는 49.5%였음.
- 이상의 조사결과들을 통하여 自願奉仕者에 대한 管理方式의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봉사자에 대한 指導가 正規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活動指針이나 評價基準이 미흡하고, 指導監督이 體系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 報償體系의 未洽

- 자원봉사자에 대한 報償方式으로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行事를 개최하는 것과 經濟的 報償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

관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로서 褒賞 및 慰安 行事, 月例會, 懇談會, 研究會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었음.¹⁴⁾

- 그러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行事內容은 收容施設과 利用施設간에 차이가 나타남. 利用施設(재가센터)의 경우 연 1회 정도의 위안행사와 2, 3개월에 1회 정도의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收容施設의 경우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이것은 收容施設의 자원봉사자 中間脫落率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무장관(제2)실 조사결과에 의하면, 自願奉仕者가 自願奉仕活動을 하는 데 필요한 經費는 월 평균 22,320원으로 파악됨. 활동경비의 충당은 활동자가 전액 本人負擔하는 경우가 57.3%이며, 일부 혹은 주로 補助金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함.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내는 회비를 제외한 액수여서 自願奉仕者의 會費까지 감안한다면, 低所得層의 自願奉仕者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經濟的 報償이 전혀 없는 경우가 66.7%로서 대부분을 차지함.
 - 현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들은 紐帶關係를 유지하고 親睦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하거나, 食事나 食費를 지급하는 정도의 보상에 그치고 있음.
- 김성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지시설 및 기관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支出하는 費用은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94.4%의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關聯豫算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재정상태가 빈약한 점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經濟的으로 報償할 수 있는 制度的 支援策이 요

14)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3 재가복지봉사센터 현황조사보고서』, 1994.

구됨.

마. 法的, 制度的 支援 未洽

- 우리나라에는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法的, 制度的 支援體制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개별 기관이나 시설별로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을 總括·調整·支援할 수 있는 機構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
- 여성개발원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自願奉仕를 活性化시키기 위해 필요한 政府의 役割에 관해 질문한 결과, 21.3%의 기관이 社會的 雰圍氣의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學校教育課程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기관은 20.8%, 專門機關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관은 20.1%였음(表 II-17 참조).

<表 II-17> 自願奉仕者 活性化를 위한 政府의 役割

정부 역할	개소(%)
사고보험제도 도입	135(18.4)
전문기관 설립지원	147(20.1)
학교교육과정에 도입	152(20.8)
사회교육기관 과정에 도입	127(17.3)
사회적 분위기 조성	156(21.3)
기 타	15(2.0)
계	732(100.0)

資料: 이청자 외,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p.91.

- 政府支援의 必要性에 대한 정무장관(제2)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활동자 중 9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必要한 分野로는 財政分野가 62.4%, 施設·資材分野가 48.9%, 弘報 및 情報提供分野가 42.0%, 教育實施가 29.8%로 나타났음.

-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자가 받기를 희망하는 支援內容으로는 最少經費支給(21.3%), 經歷認定(19.6%), 事故報償(18.4%)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기관이 받기를 희망하는 支援內容으로는 豫算支援(29.3%), 活動者 教育訓練(27.4%)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음(表 II-18, II-19 참조).

<表 II-18> 自願奉仕者가 희망하는 政府支援內容

정부 지원		명(%)
資料: 이청자 외,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p.88, 90.		
최소경비 지급		159(21.3)
활동기간 경력 인정		146(19.6)
<表 II-19> 機關이 희망하는 政府支援內容		137(18.4)
포상 수여		130(17.4)
시험혜택		83(11.5)
보험 혜택		74(9.9)
생활지원		68(9.3)
활동자 교육훈련		57(7.6)
감독직원 훈련		143(24.9)
관련법 제정		74(10.6)
불필요		2(0.3)
기 타		20(3.5)
계		574(100.0)

資料: 이청자 외,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p.90.

- 정무장관(제2)실의 조사에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를 위한 支援制度가 자원봉사활동의 活性化에 얼마나 기여하겠는가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활동기간을 經歷으로 인정해주는 제도(1.62), 사고대비 保險制度(1.66), 最少經費 지원(1.72), 國家任用考試를 볼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1.79), 자원봉사활동 貯蓄制度(1.90), 政府褒賞(2.26)의 순서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함.
- 자원봉사활동을 總括·調整·支援할 수 있는 機構의 設置 必要性에 대해서는,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사결과 자원봉사자 募集機關과 活用機關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즉 募集機關의 34.5%가 반드시 필요하다,

51.7%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活用機關의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34.3%,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1.7%였음.

- 자원봉사활동을 總括·調整·支援할 수 있는 聯合機構가 구성될 경우, 그 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役割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表 II-20과 같음.

<表 II-20> 自願奉仕聯合機構 構成時 重點적으로 遂行해야 할 役割

중점적 역할	명(%)
자원봉사 정보·지식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간	27(23.5)
자원봉사자 1차소양교육 실시	18(15.6)
봉사자의 체계적 연결 및 관리	17(14.8)
자원봉사자 및 단체간 화합도모의 장 마련	13(11.3)
세미나·강좌 개최로 전문적 봉사활동 유도	13(11.3)
자원봉사자 욕구 파악	13(11.3)
자원봉사자들의 토론의 장 마련	8(7.0)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6(5.2)
계	115(100.0)

資料: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1994, p.13.

- 이상의 조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法的, 制度的 支援이 거의 없고, 자원봉사활동을 總括·調整·支援할 수 있는 機構조차 없다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이 活性化되는 데 매우 큰 障礙要素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최소한의 經費支給, 經歷認定, 事故報償 등의 制度的 支援을 요구하는 자원봉사자와 活用기관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자원봉사자를 募集하고 活用하는 기관의 경우 자원봉사사업을 總括·調整·支援할 수 있는 機構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Ⅲ. 自願奉仕 管理體系 改善方案

1. 基本原則

- 자원봉사활동의 관리를 위한 組織은 民間이 主體가 되어 운영하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自發性과 自律性이 최대한 유지되고 순수한 시민참여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敎育訓練을 강화함.
-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制度的 支援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책임지고 수행하며, 法은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는 것이어야 함.

2. 基本方向

- 1) 자원봉사활동을 總括·調整·支援할 수 있는 組織의 新設 및 中間 및 一線組織體의 育成
 - 자원봉사재단, 자원봉사기금, 지역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組織의 新設
 - 中間組織體의 發掘 및 育成
- 2) 자원봉사 敎育 및 訓練의 강화
 -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의 敎育過程을 體系化·專門化
 - 家庭·學校·地域社會에서 자원봉사 意識이 育成될 수 있는 敎育環境 조성

3) 制度的 支援의 強化

- 經歷認定制度의 도입
- 保險制度의 도입
- 稅制支援
- 모범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褒賞 및 自願奉仕者行事 개최
- 老後報償 貯蓄制度의 도입

3. 推進戰略

가. 자원봉사활동을 總括·調整·支援할 組織의 新設 및 既存 組織體의 育成

1) 自願奉仕財團

- 자원봉사 相關업무를 全國的으로 總括하는 기구로 자원봉사재단을 신설하며, 이는 民間專門家가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認識을 提高시키고, 全國적 차원의 市民參與를 진작시키기 위한 全國센터의 역할을 함.
- 재단내에 政府의 出捐金과 民間의 寄附金品으로 自願奉仕基金을 조성하여, 全國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
- 主要 業務는
 - ① 자원봉사에 대한 弘報, 情報收集 및 提供
 - ② 자원봉사 基金의 조성 및 배분
 - ③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開發 및 支援
 - ④ 자원봉사 相關 調查研究
 - ⑤ 자원봉사 相關 對政府活動 및 國際活動 등으로 함.

- 主要 組織은

- 理事會와 事務局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기획관리부, 교육홍보부, 기금운영부, 조사연구부를 둠.

2) 地域自願奉仕센터

- 地域內 자원봉사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민간전문가가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도록 함.
- 지역내의 행정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기관장, 민간전문가, 지도적 자원봉사자 등이 運營委員會를 구성하여 運營資金을 조성하고, 事務長과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을 둠.
- 지역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登錄, 管理 및 活動支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자원봉사인력의 수급, 교육훈련, 배치, 자원봉사재단 및 타지역 자원봉사센터와의 協力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參考> 英國의 경우 전국자원봉사센터 예산의 80%를 國庫에서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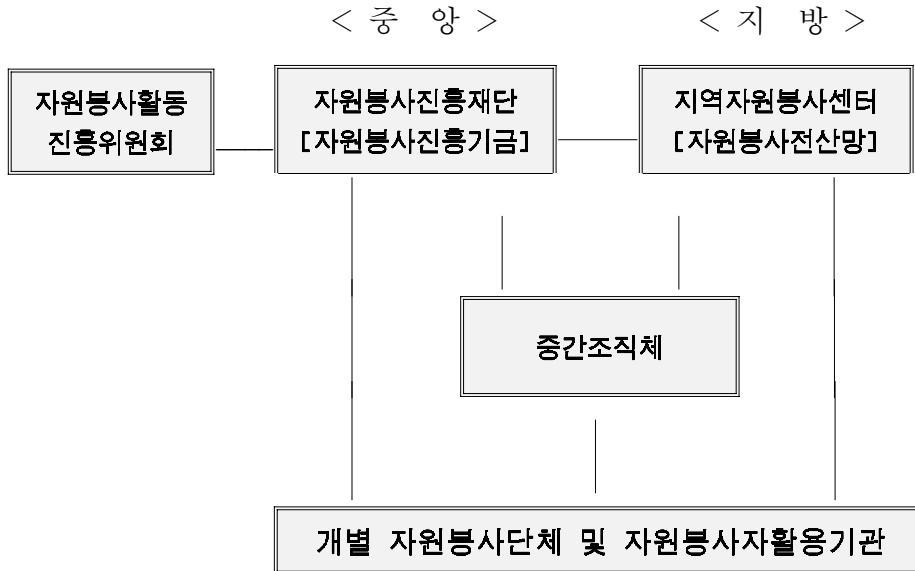
- 市·道別로 지역자원봉사센터 協議會를 둘 수 있음.

3) 自願奉仕振興委員會

- 자원봉사에 관한 基本政策, 政府의 支援事項 등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國務總理室에 설치함.
-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指導的 民間人士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재정경제원, 통일원,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를 委員으로 하고, 委員長은 互選함.

4) 既存 組織體의 發掘 및 育成

- 自願奉仕財團이나 地域自願奉仕센터, 自願奉仕振興委員會 등의 기구는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임.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국 차원의 一絲不亂하고 劃一的인 組織體系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함.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과의 協調體系가 잘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專門性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는 기존의 기관 및 단체 중에서 內實있고 代表性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조직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在家福祉 분야에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전국장애인종합복지관협의회, 재가노인복지기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을 분야별 자원봉사의 弘報, 教育訓練, 機關別 配置業務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育成시킴.
-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圖 1> 自願奉仕의 活性化를 위한 協調體系

나. 敎育 및 訓練의 強化

1) 自願奉仕管理機關 敎育課程의 體系化 및 專門化

(1) 自願奉仕者 敎育의 體系化

- 자원봉사자 敎育은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分野와 機關의 特性이 반영될 때 보다 전문적인 敎育이 가능하므로, 자원봉사관리를 위해 발굴된 각 분야의 中間組織體에서 총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능력있는 一線 個別團體를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각 中間組織體의 地域別 支部에서는 해당지역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敎育을 담당하도록 함

- 예를 들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지부에서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려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실시함.

- 教育은 현재 一回的으로 進行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의 수준을 보강하여 自願奉仕者의 特性(노인, 여성, 청소년, 전문직 등)과 서비스의 對象 및 서비스 類型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봉사기술을 습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함. 봉사자의 능력과 경험 정도에 따라 基礎教育(初級), 繼續教育(中級) 등 段階別 教育을 체계화하도록 함.
- 地域自願奉仕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補修教育 프로그램을 常設化하도록 하여 전문분야의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함. 각 자원봉사자 活用機關 혹은 機關協會에서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2) 自願奉仕 調整者 教育의 專門性 提高

- 自願奉仕 調整者(supervisor, coordinator)의 教育은 中間組織體 또는 指定 訓練機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일정 기간의 教育課程을 이수한 경우 資格證을 수여하도록 하여, 보다 책임있고 전문적인 조정 및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조정자는 社會福祉士 資格證 소지자로 하며, 각 기관 및 시설 1개소에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현재 調整을 담당하고 있는 社會福祉士가 있는 경우에도(例,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재가담당 사회복지사) 일정기간의 教育을 이수하도록 함.

(3) 自願奉仕者 教育 프로그램의 開發

- 自願奉仕財團에서는 自願奉仕 全分野에 대한 教育 프로그램을 研究·開發하도록 하고, 中間 및 一線組織體에서는 소관 專門分野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도록 함.

- 自願奉仕 教育 프로그램은 강의위주의 理論教育과 함께 현장을 경험하는 教育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여, 자원봉사에 필요한 知識·技術·態度를 체득하도록 함. 특히, 봉사를 필요로 하는 대상의 요구와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원봉사자 자신의 慾求를 정확히 진단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學校 및 地域社會의 自願奉仕 教育프로그램 導入

- 자원봉사의 동기부여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이 제고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奉仕意識이 육성되도록 教育環境을 조성함.

(1) 初·中·高·大學校 教科課程에 自願奉仕關聯 科目 導入

- 시민적 책임의식을 育成하여 자원봉사가 活性化되도록 하기 위하여 初·中·高校 教科課程에 자원봉사 관련과목을 도입하도록 함.
- 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는 서구 선진국가에서 靑少年問題가 심각해져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그들의 人性開發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조장되고 있음.
- 사회봉사 경험을 통하여 팽배해가는 個人主義를 극복하고 共同體意識을 함양하도록 하여 成熟한 市民으로 육성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뤄갈 수 있는 教育過程을 마련하는 것임.
- 최근 대학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社會奉仕科目의 도입이 전반적으로 확산 되도록 하며,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등은 自願奉仕財團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 교과과정의 도입은 적절한 교재 개발과 이론교육, 실제 사회봉사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며, 어느 정도의 强制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봉사경험이 입학 사정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함.

(2) 地域社會機關 및 市民運動機關에서의 自願奉仕關聯 教育프로그램의 強化

- 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地域社會 중심의 生活圈이 이루어지고, 地域共同體를 위한 적극적인 住民參與가 요청될 것임. 이에 지역주민이 自發的으로 參與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環境을 조성하도록 함.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민운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地域社會福祉센터의 기능을 活性化하고, 지역주민의 參與意識, 責任意識을 제고하는 教育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다. 自願奉仕 支援制度

1) 經歷認定制度 導入

-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행정능력과 대인관계 기술 습득의 경험을 감안하여 有給經歷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參考> 美國, 英國 등에서 채택하고 있음.
- 일정한 經歷 이상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公職任用, 就業·進學 등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설정이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해서는 自願奉仕財團에서 研究하여 自願奉仕振興委員會에서 심의하도록 함.
- 자원봉사의 經歷은 「自願奉仕電算網」을 통하여 管理되도록 함.
- 자원봉사 經歷의 證明은 自願奉仕財團에서 담당하도록 함.

2) 保險制度 導入

- 自願奉仕活動 중에 自願奉仕者와 봉사대상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의 보호를 위하여 保險制度에 가입하도록 함.

<參考> 美國 하와이주에서는 事故保險, 自動車保險을 法으로 보장함.

- 자원봉사자가 소속한 단체 및 시설은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의 책임을 지며, 보험관련 업무는 자원봉사재단내 企劃課에서 총괄하도록 함.

3) 稅制支援

-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자원봉사기금에 현금 및 재산을 기부한 자의 경우, 租稅減免規制法 및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減免 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參考> 프랑스의 경우 자원봉사단체 運營費나 基金 마련을 위한 收益活動에 대해 減稅惠澤을 제공함. 日本의 경우에도 企業의 자원봉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稅制支援制度를 둬. 예를 들면, 사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有給休暇制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稅制支援이 있음.

4) 褒賞 및 行事

- 自願奉仕의 活性化 및 의식 고취를 위하여 自願奉仕週間을 설정하여 각종 행사를 마련하도록 함.
- 自願奉仕의 동기부여 및 사기양양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행사를 마련하며, 褒賞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함.

5) 老後報償 貯蓄制度

- 자원봉사활동을 저축하여 노후에 보상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IV. 結論 및 政策建議

- 保健福祉部 社會福祉政策審議委員會는 自願奉仕의 活性化를 위해 다음과 같은 法的, 制度的 裝置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즉, “自願奉仕活動支援法”을 제정하여 經歷認定制度, 保險制度 등 誘引制度의 근거를 마련하며, 취직시험 등 각종 시험에 奉仕經歷을 반영하고 自願奉仕貯蓄制, 有功者에 대한 褒賞制 등을 法律로 규정함.
 - 早期教育을 통한 자원봉사의 생활화, 地域單位 自願奉仕案内所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電算管理體系 구축, 자원봉사자의 선발·교육·배치 등의 管理를 地域別, 單位別로 體系化하는 등임.
- 그러나 保健福祉部가 立法을 시도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部處間의 異見으로 지연되어오던 중, 범위가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公益分野가 포함된 與野合意 單一法인 “自願奉仕支援基本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
 - 單一法의 제정 필요성은 내무부 등 政府部處 內部와 民間團體에서 제기되었고, 내무부는 별도로 자체 특별법 시안을 만들기도 함.
 - 정치권의 自願奉仕活性化法案 제기 경위는 1) 內務部, 法務部, 環境部 등의 반발에 대한 대응, 2) 분야별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의 경우 混線과 지원기구 重複, 豫算浪費 우려, 3) 자원봉사자의 選舉 참여여부를 크게 의식한 것으로 보임.
 - 이 法案의 내용에는 사회복지 외에 環境監視, 法秩序 준수, 選舉參與 등 각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고, 就業惠澤, 經歷 및 大學學點 인정, 高校內申 반영 등의 혜택이 명시됨. 이러한 單一法 제정이 與野合意로 추진될 경우 保健福祉部 案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이처럼 自願奉仕活動에 대해 정치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 그러나 이들 法案은 자원봉사활동의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음. 즉 자원봉사활동의 自發性, 순수한 市民參與 特性이 살려지지 못하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과잉개입의 소지가 내포됨. 法이나 制度를 통해 全國民이나 全自願奉仕團體를 組織化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선진국의 자원봉사 관련법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은 자원봉사관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사회복지관련법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간접지원함.
 - 미국은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단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 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정부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법임.
-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自願奉仕活動 關聯政策을 立案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1) 자원봉사활동이 不足한 豫算을 메꾸는 手段이 되거나 혹은 政治的으로 利用되어서는 안됨.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우선순위는 公的 責任의 확대, 專門人力의 확보에 두어져야 하며, 이 점에서 福祉豫算을 縮小하려는 意圖를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先進國의 自願奉仕 育成政策과는 구별되어야 함.
 - 政府의 통제를 받는 官邊團體는 국민의 호응을 받기 어려움.
 - 특히 本 研究에서 새로 설립할 것을 제의한 自願奉仕財團, 地域自願奉仕센터, 自願奉仕振興委員會와 관련하여, 정부는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되 統制나 政治的 干涉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

한 입장이 필요함.

2) 자원봉사활동을 實質的으로 育成하는 育成策이 필요함.

- 本 研究의 제4장에서 제시한 바 있는 經歷認定制度, 保險制度, 稅制支援, 褒賞 및 行事支援을 통해 실질적인 育成策을 제공해야 함.
- 선진국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여가시간의 증가, 삶의 수준 향상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시민참여와 자조(self-help) 규범에 대한 인식증가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 및 정부의 역할증대와 깊은 관련이 있음.
-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사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보장, 자원봉사단체 기부금 등에 대한 면세 혹은 감세혜택 등의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원봉사 관련단체의 운영비 보조, 직원 유급휴가제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3) 公共部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體系的 評價를 통해 有名無實한 활동은 과감히 정리하고, 效果的인 것으로 評價되는 活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豫算을 투입하여 活性化함.

- 현재 실시되고 있는 公共部門 自願奉仕活動 중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保護觀察法에 의한 保護委員制度, 更生保護法에 의한 更生保護委員制度, 少年院法에 의한 保護少年指導委員制度 등 法務部가 소관하는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 保健福祉部가 관장하는 社會福祉事業法上的 福祉委員制度는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음. 保健福祉部 소관의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體系的 評價를 통해 公共 自願奉仕活動을 과감히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美國의 경우처럼, 은퇴노인에게 사회적 기여의 기회를 제공하

고 專門性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公共次元에서 自願奉仕活動을 組織化하는 등의 시도도 고려해볼 만함. 美國, 英國 등에서는 公共部門의 自願奉仕活動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豫算 및 人事考課 反影制度를 마련하는 방안도 공무원이 率先垂範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參 考 文 獻

- 김기선,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83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4.
- 김미숙,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상욱,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성이, 『자원봉사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 김영호, 『자원복지의 이론과 실제』, 홍익제, 1989.
- , 「자원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현상학적 커뮤니케이션 어프로치」, 『사회사업논집』 제8권 제11호, 강남사회복지학교, 1988.
- , 「볼런티어활동의 필요성과 교육, 훈련」, 『아산』 제20호, 1983.
- 김용택, 「선진외국의 지역사회복지」, 『아산』 제51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1.
- 내무부, 『내무행정백서』, 1994.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3.
- 노미혜, 「공공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여성 유희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여성개발원, 1985.
- , 「지역사회개발과 자원봉사활동」, 『여성연구』 제2권 제4호, 한국여성개발원, 1984.
-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의 활용실태와 효율적 활용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1993.
- 박태영,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책」, 『사회복지』 제110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 박태영,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법무부, 『법무연감』, 1992.
- 성민선, 「사회복지수행에 있어서 자원봉사 운동의 의의와 효과적 방안 연구」, 『성심여대논문집』 제12호, 1981.

- 이대근, 『지역복지발전과 자원봉사 활용방안』, 『사회복지』 제109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 이성록, 『자원봉사자의 활동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요식 외, 『향후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
- 이청자 외, 『자원활동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 이혜원, 『일본의 민생위원제도에 대한 사적 고찰』, 『사회복지』 제108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 장소영, 『영세민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7호,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985.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사회개발원,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 1991.
- 정무장관(제2)실,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조사보고서』, 1993.
- _____,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킹 결과보고서』, 1992.
- 정진영,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논문집』 제11호, 서울여자대학교, 1982.
- 조희일, 『자원봉사』, 『한국사회복지학의 평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2.
- _____,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8, 한국사회복지학회, 1991.
- _____,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_____, 『자원봉사의 동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복지』 제34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 주영길, 『볼런티어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최일섭·윤석인·최원규, 『자원봉사와 적십자 활동 연구』, 1991.
- 최종애, 『사회복지기관에서의 volunteer 활동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사업논문집』 제6호, 강남사회복지학교, 198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2 재가복지봉사센터 현황조사보고서』, 1993.
- _____, 『1993 재가복지봉사센터 현황조사보고서』, 1994.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987.

- _____, 『지역복지봉사의 이론과 실제』, 1993.
- 한국여성개발원, 『현대사회와 자원활동』, 1990.
- 현대사회연구소,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조사 연구』, 1985.
- 황성철·강혜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및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Darvill, Giles and Munday, Brian, *Volunteers in the Personal Social Services*, Tavistock Pub., London, New York, 1984.
- Graycar, Adams, "Informal, Voluntary and Statutory Services: The Complex Relationship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13, No.4, 1983.
- Kramer, Ralph M.,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77.
- Ryan, Francis J., 『아동복지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자원봉사기관을 조정하는 협회의 기능』, 『아동복지』 제9권 제4호, 홀트아동복지회, 1981.
- U.S. Department of Labor, *Manpower Administration*, Ralph M. Kramer, 1981.
- Wilensky et al., 장인협 역,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1979.